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20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3. D영농조합법인의 체납 취득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그 자녀이다. 원고 A는 D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70%(350,000주), 원고 B은 출자지분 24%(120,000주), 원고 C은 출자지분 2%(10,000주)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 8. 23.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7년 ~ 2019년 체납 취득세(부동산) 등 16건 합계 110,165,450원(= 지방세 87,458,530원 + 가산금 22,706,920원) 중 각 출자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77,115,540원(70%), 원고 B에게 26,439,360원(24%), 원고 C에게 2,203,010원(2%)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그런데 원고들은 2015. 4. 6.경 E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전부 양도하였고, E 등은 과세관청에 그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는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사이에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E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4. 8.경 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원고 A의 지분비율 70%(350,000주), 원고 B의 지분비율 24%(120,000주), 원고 C의 지분비율 2%(10,000주)로 된 조합원명부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조합원명부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양도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양도양수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들은 2020. 2.경 'E, F, G(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E 등이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E 등에 대하여 2020. 8. 31. 기소중지처분이 내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이사)가 2015. 4. 6.경 F로, 2015. 11. 3. G로, 2015. 12. 2. E으로 각 변경된 바는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조세심판청구 당시 및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15년경 E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는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는 '주식과 관련자료 등을 지인에게 넘겼고 피고소인들(E 등)은 지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법인과 주식을 양수하였다',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고소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얼굴을 본 적조차 없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피고소인들에게 순차적으로 법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조차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끝.